과징금·과태료 부과사항

1. 조치 대상 법인명	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
2. 과징금 등의 종류	과징금, 과태료
3. 과징금 등의 근거	- 과징금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,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 및 <별표9>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 - 과태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, 제4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및 <별표2> 과태료 부과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, 제4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<별표2> 과태료 부과기준
4. 과징금 등의 원인	- 과징금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- 과태료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미확인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
5. 과징금 등의 내용	- 과징금 : 756,000,000원 - 과태료 : 90,000,000원
6. 기타	- 결정통보일 : 2024.09.13 - 과태료의 경우 기간내 자진납부 (72,000,000원)